

의안처리상황표

의안번호	594		
건명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발의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6년 4월 3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6년 4월 28일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청취완료	
이송연월일	2026년 4월 30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우리구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성북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26.6.30)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의안 번호	594
----------	-----

제출년월 : 2026년 4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성북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26.6.30)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동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현 위탁체	규모	현 위탁기간
1	성북구 보훈회관	성북구 화랑로 130 (월곡2동)	성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대표 양승훈)	토지 992㎡ 건물1,215㎡ (지하1, 지상3)	2023.07.01. ~ 2026.06.30

나. 위탁기간 : 2026.7.1. ~ 2029.6.30.(3년)

다. 개관일 : 2007.7.1.

라. 인력현황 : 3명 (사무원1, 경비원1, 미화원1)

마. 주요시설 : 보훈단체 사무실(10개), 강당, 체력단련실, 목욕탕

- 운영 프로그램 : 스포츠댄스 교실, 국선도 교실, 이·미용

바. 운영예산 : 286,944천원 (인력운영비 126,075천원, 수용비 160,869천원)

사. 위탁 사업의 범위

- 1) 보훈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2) 9개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회원 간 교류·화합을 위한 사업
- 3)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4)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국가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회의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